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. 3. 9 선고 2020가단86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주 문

1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

가. 피고와 BBB 사이에 2020. 5. 21.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BB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. 5. 22. 접수 제XXX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